

하 동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469호 2016. 11. 25. (금요일)

조 례

- 하동군 조례 제2186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
- 하동군 조례 제2187호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규 칙

- 하동군 규칙 제115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6

고 시

- 하동군 고시 제2016-146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209차)..... 40
- 하동군 고시 제2016-148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 허가 고시(강종* 외 6명)..... 43
- 하동군 고시 제2016-14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연장 허가 고시(장선* 외 1명)..... 51
- 하동군 고시 제2016-150호 경상남도(창녕·하동·산청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동군) 기본계획 고시... 53
- 하동군 고시 제2016-151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강연*)..... 55

입 법 예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1075호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56
- 하동군 공고 제2016-1078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3

공 고

- 하동군 공고 제2016-1076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82
- 하동군 공고 제2016-1083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변경) 공고 .. 83
- 하동군 공고 제2016-1091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김충* 외 3명) .. 84
- 하동군 공고 제2016-1096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대송천 정비사업) 88
- 하동군 공고 제2016-1097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사두골천 사업) 93
- 하동군 공고 제2016-1098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상장암천 정비사업) 98
- 하동군 공고 제2016-1099호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의신천 정비사업) 103

회 람									
--------	--	--	--	--	--	--	--	--	--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86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제10조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 ~ 제8조 (생략)</p> <p><신 설></p> <p><u>제9조</u> (생략)</p>	<p>제1조 ~ 제8조 (현행과 같음)</p> <p><u>제9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u> 의원이 공 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 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 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 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p> <p><u>제10조</u> (현행 제9조와 같음)</p>

(4) 제 469 호

하동군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조례 제2187호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회기일수) 제1항 중 “범위 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3조(집회일) 제1항 중 “7월 10일”을 “6월 10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때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제2항 중 “기타”를 “그 밖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하동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된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16년 11월 25일

하 동 군 수 윤 상 기 인

하동군 규칙 제1155호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하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환경보호과 분장사무 가목 제15호 개정규정은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6.1.1.규1141>

하동군 본청 실·과장의 사무분장(제4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가	군정전반의 종합기획·조정, 새로운 시책, 각종 평가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 전반에 관한 기획 및 조정·통제
	2	실과소 업무의 기획 조정
	3	중장기 계획 및 조정
	4	군정업무 주요업무 확인평가
	5	군수공약 사항 및 지시사항 총괄관리
	6	군민의 날 행사 및 군민상 시상
	7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8	통계조사 및 통계연보 발간
	9	외국인 정책 및 통계, 등록
	10	새로운 시책 발굴 추진
11	군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기획조정 실장	나	정책개발 및 미래 전략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
	1	공모사업 총괄추진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총괄
	3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사항
	4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5	창조지역사업 신청 및 관리
	다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1	예산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2	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3	예산의 전용, 이용(이체), 변경 및 예비비 집행 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심사, 설계용역과제 사전심의회 총괄추진
5	전시 지방행정 동원계획 수립시행	
6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7	국고예산확보 및 보조금 관리 총괄	
8	지방기금 운영 총괄	
9	지방채 발행 계획 및 상환업무 총괄	

하 동 군 공 보

(8)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기획조정 실장	라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
	1	홍보 계획 수립
	2	군정홍보 및 보도
	3	언론 홍보자료의 수집 및 편찬
	4	주민과 대화의 날 운영
	5	전시 홍보 및 매체동원에 관한 사항
	마	군정·비위 감사에 관한 사항
	1	군 행정의 감사계획 수립과 시행
	2	상급기관 감사의 수감 및 처분 요구사항 처리
	3	공무원 비위 예방대책과 비위조사·처리
	4	주민 감사 청구제 운영
	5	군 대형공사 주민참여 감독자 임명제도 운영
	6	공직자 재산등록 업무
	7	계약심사
	바	법무·소송·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	조례, 규칙, 훈령 등의 제·개정, 폐지
	2	소송(국가, 행정, 민사)·행정심판·소청에 관한 사항
	3	행정절차제도 운영
	4	각종 규제의 개혁 및 관리
	5	인허가 전담부서 운영 지원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관광 실장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2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4	관광지 지정 및 개발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1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지원
	2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
	3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4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
	6	어슬렁 캠핑 업무 추진
	7	회남재 숲길 걷기 업무 추진
	8	국제트레일 러닝 업무 추진
	9	축제 프로그램 신규 발굴
	10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11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하 동 군 공 보

(10)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문화관광 실장	마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2	관광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4	관광 통계 업무 추진
	5	관광객 안내(팸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6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7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8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9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10	관광상품 개발
	11	관광불편 민원 처리 업무 추진
	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6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경제수산 과장	가 지역경제발전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에 관한 종합대책
	2 시장개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실업자대책 및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
	4 공산품 품질관리 및 물가관리
	5 지식재산권 업무
	6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사항
	7 계량기 업무
	나 에너지정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에너지 수급 종합계획 수립
	2 신재생에너지 사업개발 및 세부계획 수립
	3 신재생에너지 보급, 기술연구개발 및 사업화 계획 수립
	4 석유 및 대체연료사업법 관련 업무
	5 전원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다 중소기업육성,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1 외국인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업활동 규제 완화 및 기업지원에 관한 사항
	3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4 농공단지,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장설립 승인, 등록, 변경, 창업승인 및 사후관리
	6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라 해양개발, 수산진흥, 해양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1 해양관광개발 사업 및 투자유치 계획 수립 및 추진
	2 국가어항 및 다기능 어항 개발에 관한 사항
	3 국가마리나 개발계획 및 개발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해면) 관리에 관한 업무
	5 수산행정 업무의 기획조정 및 총괄
	6 어촌종합개발사업 선정 및 개발에 관한 사무
	7 연안정비 사업 계획 수립 및 연안오염 방지시설 사업
	8 어항시설사업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
	9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및 어촌환경 개선
	마 수산사업 및 수산물 관리에 관한 사항
	1 어장이용 개발계획 수립
	2 해면어업 면허 및 관리
	3 수산증식사업 및 사후관리
	4 어업 피해예방 및 보상
	5 어선등록 및 관리
	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7 안전조업지도 및 해난사고 예방
	8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
	9 어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하 동 군 공 보

(12)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행복 과장	가	기초생활 보장지원 및 주민복지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사회복지 종합계획 수립·평가
	2	기초생활보장지원업무 계획 수립 추진
	3	생업·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특별회계 관리
	4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관리 및 지원
	5	지역사업의 개발·관리 시행
	6	의사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
	7	재해구호(이재민 실태조사, 구호금품 지급등)
	8	종합사회복지관 총괄 및 시설관리
	나	장애인복지, 자활 업무에 관한 사항
	1	장애인 복지사업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추진
	2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 및 지도점검
	3	재가장애인 생활안정지원
	4	장애인 일자리사업 추진
	5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6	장애인바우처 지원 사업
	7	자활프로그램 및 자활후견기관 관리
	8	가사간병 방문 도우미사업
	9	사랑나눔미 빨래방 운영
	다	노인복지 대책수립 및 장묘문화에 관한 사항
	1	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 및 추진
	2	노인소득보장 및 취업기회 확충
	3	묘지설치 허가 및 분묘의 개장신고
	4	사랑의 주택 관리 및 실버식당 운영
	5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경로당 관리
	6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7	기초노령연금 지원 및 관리 운영
	8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라	여성복지 행정에 관한 사항
	1	여성정책관련 계획 수립 및 추진
	2	여성단체활동 활성화 및 지원
	3	여성주간행사 및 여성대회 관련사항
	4	여성폭력예방 및 방지사업 추진
	5	가정, 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6	저소득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 지원 및 관리
	7	가족지원 및 건강가정지원 업무
	8	다문화가정 복지지원사업
	9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실과명	분장사무	
주민행복 과장	마	복지급여대상자 통합조사관리 및 의료급여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신규조사, 선정, 자격관리, 근로능력판정에 관한 사항 추진
	2	복지대상자 각 사업팀 보장 결정 요청
	3	신규신청자 이의신청 처리
	4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관리 및 특별회계 관리, 의료급여사례관리
	5	차상위 계층 및 사회취약 계층 지원 업무
	6	복지대상자 연간 조사계획 수립
	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및 희망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
	1	복지대상자 통합사례관리
	2	지역사회자원 발굴 및 관리
	3	공공·민간기관 서비스연계 체계구축
	4	방문형 서비스사업 협력체계 구축 운영
	5	129희망콜(보건복지)센터 업무
	6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관리
	7	불우이웃돕기(공동모금회 연계), 후원·결연 업무
	8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하 동 군 공 보

(14)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가	조직, 인사, 여론,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
	1	공무원의 임용, 표창, 징계, 교육
	2	호봉승급 및 호봉 재 확정
	3	공무원시험, 인사위원회 운영
	4	여론, 의전관리
	5	집단민원 총괄관리 및 행정구역 개편조정
	6	전시 주민 및 차량통제에 관한 사항
	7	읍면 기능전환 계획수립 및 시행
	8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직제관리
	9	국가기반체계 보호
	10	전국 및 경남시장군수협의회 관련 업무
	11	일제강점하 및 과거사 진상규명
	나	공무원단체, 후생복지, 선거, 인구증대시책 및 사무능률에 관한 사항
	1	복무, 보안, 공인관리
	2	주민자치, 국민투표, 주민투표 등 선거관련 업무
	3	정부3.0업무
	4	적십자회비 모금
	5	직장동호회 운영
	6	인구늘리기 시책추진
	7	사무위임 및 전결규정에 관한 사항
	8	공무원단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9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10	직장금고 운영
	다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사항
	1	청소년 육성계획 및 청소년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3	민간청소년 수련시설 허가, 등록 및 지도
	4	청소년 자립대책 및 모범청소년 발굴 포상
	5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 운영
	6	청소년 보호법 관련 사무 추진
	7	요보호아동 후원자 결연사업 지도관리
	8	결식아동 보호지원
	9	가정위탁 보호사업 지원 및 관리
	10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행정과장	라	평생학습 및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1	범 군민 교육대책 운영
	2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지원 활성화
	3	인재육성 장학재단
	4	특수대학(분교) 설립 육성
	5	교육환경 및 교육개발 기반개선
	6	평생학습관 설립 운영
	7	학교 기숙사·학원 설립 지원
	마	행정전산화 및 정보통신 관리에 관한 사항
	1	지역정보화 촉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역정보화 촉진협의회 운영
	2	군민 정보화 마인드 향상 및 정보 활성화 대책 추진
	3	시군구 행정종합시스템 구축 운영
	4	행정업무 전산시스템 주요서버 도입 및 운영
	5	정보화시범마을 조성 및 운영
	6	회의실 방송장비 총괄 관리
	7	새울행정시스템 구축 운영
	8	IP전화시스템 관리 및 운영

하 동 군 공 보

(16)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안전총괄 과장	가	안전·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1	안전총괄·안전문화, 사회안전 업무
	2	특정관리대상시설 및 재난취약시설 관리
	3	특별사업경찰 업무 지원
	4	각종 재난상황 관리(보고 및 초동대응)
	5	안전·재난대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운영
	6	내수면 수상레저 사업 등록 및 안전관리
	7	승강기 관리 업무
	나	민방위비상대책에 관한 사항
	1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시행
	2	비상대비 대책수립 업무
	3	전시 병력동원업무 지원
	4	예비군 육성 지원
	5	사회복무요원 관리
	다	복구지원 및 방재에 관한 사항
	1	지역방재 계획 수립
	2	자연재난 피해상황 총괄 및 종합대책
	3	자연재난 복구계획 수립추진
	4	재해위험지 조사 및 방재시설물 점검 및 관리
	5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6	재해 사전대비 업무
	7	풍수해 보험 업무
	라	하천정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하천 정비·유지관리
	2	기성제 정비 및 하도개선사업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3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골재 채취업 등록 및 관리
	5	소하천 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6	공유수면(국토부)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사항
	마	섬진강 관련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섬진강 관련 업무 관리
	2	섬진강 인접 지방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
	3	국가하천구역 편입 토지 보상
	4	하천점용허가 및 점용료 관리
	5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6	공유(도유)재산 관리(하천구역 내)

실과명	분장사무	
민원과장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G4C)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군정기록물 관리
	9	행정정보공동이용
	10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3	지리정보신규사업 타당성 및 연계성 검토 총괄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5	타 정보화사업과 GIS연계업무 및 통합 D/B 지원
	6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	지적공부세계측지계변환업무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부동산 실거래 업무
	5	새주소 도로명 부여 및 관리
	6	공간정보사업
	7	토지거래허가 업무
	8	지명에 관한 업무(지명위원회)
	마	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3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4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5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6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7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하 동 군 공 보

(18)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재정관리 과장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세정의 전문성, 효율성 대책 추진
	2	지방세 부과(자동차세, 주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및 과세결정
	3	은닉세원 조사 및 발굴
	4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운영
	5	지방세 구제업무
	6	지방세 전산시스템 운영 관리
	7	재산세(주택분, 토지분, 건축물, 선박·항공기) 부과
	8	지방세 세무조사 및 기타 지방세 부과
	9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10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세출예산 경리 및 결산
	2	세입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출납보관
	3	공사 용역 계약 및 기타 계약관리
	4	공무원 급여 및 원천징수
	다	세입에 관한 사항
	1	세외수입 관리
	2	자금운용 및 자금배정
	3	국도비 및 보조금관리
	4	금고관리 및 수납대행점 관리
	5	수입증지 관리
	6	세입 과오납금 환부처리
	7	기부금품 모집 및 심의처리
	8	세입징수보고 및 세입결산
	9	세외수입원 발굴 등 세외수입 증대방안 추진
	10	기타 지방세입 수납업무에 관한 사항
	11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라	채납관리에 관한 사항
	1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채납 정리 및 보고
	2	지방세 및 과년도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자동차등 과태료 채납 포함)
	3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4	경매 및 공매관리
	5	부동산 · 예금 · 채권 압류
	6	행정규제(관허사업 제한, 고발, 신용정보 등록, 출국금지, 기타 행정규제)
	7	자동차 번호판 영치
	8	법원 경매 교부 청구 및 배당금 수령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물품수급관리 계획수립, 재물조사 실시
	2	청사·관사 정비계획 수립 및 관리 지도
	3	국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업무지도 감독
	4	기획재정부 소관 국유 잡종재산 관리
	5	도 · 군유 잡종재산 관리
	6	관용차량 관리
	7	물품출납, 보관 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산림녹지 과장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 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산림분야 종묘업 등록업무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9	백두대간 지원업무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3	숲 가꾸기 사업
	4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5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6	송림공원 관리
	7	입목벌채 허가, 신고
	8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9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0	숲길 조성 및 관리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8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4	산촌생태마을 조정 및 관리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원 조성 및 관리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4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5	군립공원 관리
	6	학교숲 조성 업무
	7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8	섬진강재첩테마공원 조성

하 동 군 공 보

(20)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건설교통 과장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용수 개발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6	농지개량사업 시행 인가
	7	정주권 개발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	밭기반 조성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1	공유(도유)재산 관리(농업생산기반시설 내)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3	접도구역 관리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실과명	분장사무	
건설교통 과장	라	마을만들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 선도, 일반)
	2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3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4	신규마을조성사업
	5	시군 창의사업
	6	특색있는 마을만들기사업
	7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8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마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하 동 군 공 보

(22)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국제통상 과장	가	농·특산물의 통상에 관한 사항
	1	농산물 국내유통 관련 전반
	2	농산물 유통시설 확충사업
	3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4	농·특산물의 쇼핑몰 및 각종 판매장 운영관리
	5	특산물의 마케팅 지원
	나	농·특산물 수출 지원에 관한 사항
	1	농·특산물 수출관련 전반
	2	수출확대 종합계획 수립
	3	해외시장 개척 활동 및 홍보
	4	수출전문업체 및 국내외 바이어 육성관리
	5	수출농단 및 관련시설 지원관리
	6	수출 증대를 위한 각종 지원
	7	수출홍보 마케팅 지원
	다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
	1	외자 및 국내 기업유치 활동
	2	투자유치 관련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3	투자유치 관련기관·단체 운영 지원
	4	투자유치 타깃기업 관리
	5	개발 투자자 발굴 및 유치
	라	자매결연, 대외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	자매결연, 국·내외교류업무 총괄
	2	국제교류업무 계획 및 개발
	3	국제 자매우호도시 관리
	4	국제파견 연수공무원 관리 및 지원
	5	국내자매도시 관리 및 교류협력사업
	마	자원봉사단체, 사회봉사단체 관리에 관한 사항
	1	사회봉사단체 관리 총괄
	2	사회봉사단체 보조금 지급 및 관리
	3	자원봉사활동 개발 및 운영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자원봉사 활성화 교육연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6	자원봉사자 우대시책 발굴 및 추진
	7	자원봉사종합센터 관리 및 사업지원
	8	읍면 복지회관 관리
	9	가로기 관리
	10	주민소득 지원관리

실과명	분장사무	
환경보호 과장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1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14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15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리 및 운영,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제
	나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1	환경오염 근절대책 추진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
	3	환경오염피해 발생 조정관련 업무
	4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5	생활, 건설 소음진동 규제관련 업무
	6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추진
	7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특정시설 설치신고
	8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구제
	9	대기환경 규제 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하 동 군 공 보

(24)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도시건축 과장	가	도시 종합개발계획의 수립 및 온천에 관한 사항
	1	군 관리 계획수립 및 관리
	2	도시계획 입안 시행
	3	시가지 및 도시구획 정리
	4	군 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
	5	도시종합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6	택지 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7	경전선 철도 이설
	8	광역권개발계획에 관한 사무
	9	개발촉진지구 지정
	나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1	군 계획시설 개설계획 수립 및 편입부지 보상
	2	군 계획시설 개설공사 시행 및 감독
	3	도시공원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4	소도읍 육성 업무 및 섬진강체육공원 조성
	5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관리
	다	건축 디자인(광고물) 및 행정에 관한 사항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2	빈집 정비사업, 마을 가꾸기 사업
	3	위법건축물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
	4	공동주택 사업승인 및 관리
	5	아름다운 건축물 가꾸기 추진
	6	재해주택 관리
	7	주거복지(급여)에 관한 사항
	8	광고물 등 허가·신고 및 지도 감독
	9	경관개선사업 추진
	10	공공디자인 종합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
	라	건축인허가(민원)에 관한 사항
	1	건축신고 및 허가업무
	2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업무
	3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 촉탁
	4	건축물 착공신고 및 건축물 사용승인
	5	건축물 대장정비 사업추진
	6	분양대상 건축물 분양승인
	마	복합민원에 관한 사항
	1	개발행위허가 및 사후관리
	2	농지전용허가·협의·변경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3	산지전용허가·협의·신고 및 전용지의 사업완료 후 5년까지 사후관리
	4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준공검사 및 준공 후 수질검사

실과명	분장사무	
산단조성 과장	가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총괄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1	남해안권발전 종합계획 총괄 기획·조정
	2	남해안시대 중장기 프로젝트 발굴
	3	남해안시대 관련 자료 수집 및 홍보물 제작
	4	동서남해안권발전특별법 동향관리 및 개별법 관련 업무 추진
	5	선벨트 남중권 프로젝트 기획 조정
	6	남해안시대 관련 해양개발사업 추진
	7	해양레저산업 개발계획 수립 및 시행
	나	경제자유구역 개발에 관한 사항
	1	갈사만조선산업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추진
	2	대송산업단지조성 및 사후관리
	3	경제자유구역 관련 특수목적법인 이사회 운영 및 관리
	4	경제자유구역 관련 기반시설(내부간선도로, 공업용수, 폐수) 사업 추진
	5	해양플랜트 종합시험연구원 조성 및 관리
	다	경제자유구역 내 신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
	1	신도시 개발지구 지정
	2	갈사만 배후도시 개발
	3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에 관한 사항
	5	택지개발에 관한 사항
	6	공영개발에 관한 사항
	7	공업지구 내 공장 설립 등에 관한 사항
	8	두우배후단지 조성 및 사후관리
	9	금성조선농공단지 및 사후관리
	라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단지 보상에 관한 사항
	1	경제자유구역개발 보상 업무 추진
	2	공공용지 편입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3	토지수용 재결신청 및 보상민원 해결
	4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 업무 추진

하 동 군 공 보

(26) 제 469 호

[별표 2] <개정 2014.9.2, 개정 2016.1.1.규1141>

하동군 직속기관 과·소장의 사무분장(제6조 및 제9조 관련)

실과명	분장사무	
보건소장	가	보건행정에 관한 사항
	1	공중보건 의사 배치·복무 관리
	2	보건기관 시설물 관리
	3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및 지도
	4	지역보건 의료계획 수립
	5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6	보건지소 의약품 및 각종 기자재 구매업무
	7	보건사업 업무기획 및 조정
	8	의료반 운영 및 각종 의료지원 업무
	9	건강검진기관 지정 및 건강진단 등 신고
	나	예방의약에 관한 사항
	1	소독의무대상시설관리
	2	의료기관 등 지도 관리 방역소독 사업
	3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 지도·점검
	4	마약류 지도·관리
	5	한센병 등록환자 관리
	6	예방접종 사업 및 결핵 관리
	7	신종감염병 발생시 대책상황실 운영
	8	표본감시 의료기관 운영 및 각종 감염병 관리 웹 보고
	9	응급의료에 관한 업무
	10	결핵관리
	11	장기이식 등록 관리
	12	기생충퇴치사업
	13	성병, 에이즈 등 관리
	14	해하수 관리
	다	건강지원에 관한 사항
	1	건강증진사업
	2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리 및 지원
	3	국가암 조기검진
	4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5	지역사회 건강조사
	6	노인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
	7	저소득층 특수질병 조기검진사업 출산장려시책 지원
	8	정신보건센터 운영 및 관리
	9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10	저출산 고령화 대책
	11	출산장려시책 지원
	12	33헬스 프로젝트(폐암검진, 자궁경부확대촬영사업)

실과명	분장사무	
보건소장	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1	지역특화행태개선사업(영양, 운동, 비만, 절주)
	2	방문건강관리사업(방문진료 및 전담인력관리)
	3	말기암 환자 호스피스 연계사업
	4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	만성질환관리사업(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6	금연사업(교육, 금연클리닉 운영)
	7	모자보건사업
	8	재가장애인 등록 및 재활치료
	9	경로당 방문진료
	10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11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
	12	치매관리사업
	13	한의약건강증진 HUB보건소사업
	14	노인의치보철사업
	마	진료에 관한 사항
	1	건강검진 업무
	2	민원 제증명 발급, 수입금 관리 등 민원실 운영
	3	성병, 에이즈 등 각종 검사관리
	4	건강검진, 민원 병리검사 관리
	5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 등
	6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7	특수의료장비 관리
	8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업무
	바	공중이용시설 안전위생관리에 관한 사항
	1	식품영업(신고·허가)에 관한 사항
	2	공중위생업소 개설업무
	3	위생지도 행정의 종합기획·조정
	4	무허가업소 지도단속
	5	국민건강 위해식품 단속
	6	유전자재조합식품 표시제 관리
	7	식품·공중위생 교육·홍보

하 동 군 공 보

(28)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농축산 과장	가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나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양곡 수급관리
	2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3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4	FTA 대책 및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불제
	6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7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 토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환경개선

실과명	분장사무	
농촌진흥 과장	가	농업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
	1	농촌지도사업 종합기획, 조정
	2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 지도
	3	귀농인 관리 및 지도
	4	농업인 품목조직 육성에 관한 사업
	5	농민회 육성 지도
	6	농촌총각 행복가정 만들기 사업
	7	농업인 교육 훈련
	8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및 조직관리
	9	농업경영 개선지도
	10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나	농촌관광 및 체험에 관한 사항
	1	농촌체험관광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
	3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및 관리지도
	4	팜스테이 마을 육성 및 관리 지도
	5	농산물 및 소규모 마을축제
	6	농가민박 육성 및 관리
	7	마을 가꾸기 사업
	8	농촌관광 체험행사 지원 및 종합계획 수립
	다	농업의 6차산업에 관한 사항
	1	향토산업 종합발전 계획수립 및 시행
	2	벤처농업 육성
	3	농·특산물의 가공 및 식품산업 육성지원
	4	새로운 지역특화산업 개발 및 지원
	5	농업인 기술개발 사업
	6	농업경영 개선지도
	7	농업인 정보화 촉진 사업
	라	농촌자원 개발 및 식품개발에 관한 사항
	1	농촌생활개선사업의 계획 및 평가
	2	농작업환경개선 및 편의장비 보급
	3	생활문화전승 및 기술지원
	4	생활환경개선 시범사업 육성
	5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도
	6	생활개선회 육성 및 관리
	7	농촌여성 활력 증진교육
	8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및 관리
	9	향토음식 개발 및 보급
	마	농업기계화 촉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농기계 순회 수리반 운영
	2	농업기계 사후봉사 업체관리
	3	농업기계화 촉진 및 실수요자 교육
	4	농업 기계화사업
	5	농기계 보관 창고 관리
	6	농업기계 대여은행 설치·운영

하 동 군 공 보

(30) 제 469 호

실과명	분장사무	
농업소득 과장	가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 농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5	과학영농시설 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7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실증시범 사업
	나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다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채소·화훼 종합계획 및 생산
	2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3	채소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7	채소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라	과수, 특용작물 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과수·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2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3	과수·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5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6	잠업 기술 지도
	7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마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공동 포장재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상사업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5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문화 관광 실장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가	문화예술에 관한 사항
	1	지방문화예술 진흥	1	지방문화예술 진흥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2	문화예술분야 지도 육성 및 관리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3	문화원 운영 지도 감독
	4	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4	진시문화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5	공공도서관 지원 및 인쇄소·출판사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6	공연장 등록 관리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7	음악 및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	문화시설 사업추진	8	문화시설 사업추진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나	문화재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1	문화재 안전에 관한 사항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2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도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3	국·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4	문화재를 활용한 관광상품화 사업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5	천연기념물(동물) 구조 및 치료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다	관광개발에 관한 사항
	1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1	관광개발 계획수립 및 시행
	2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관광개발사업 추진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3	관광관련 민자유치 계획 수립 및 시행
	4	관광지 지정 및 개발	4	관광지 지정 및 개발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라	축제지원에 관한 사항
	1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지원	1	각종 축제관련 종합계획 추진 및 총괄지원
	2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	2	화개장터 벚꽃축제 추진
	3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3	하동야생차문화 축제 추진
	4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	4	알프스하동 섬진강 재첩축제 추진
	6	어슬렁 캠핑 업무 추진	6	어슬렁 캠핑 업무 추진
	7	회남재 숲길 걷기 업무 추진	7	회남재 숲길 걷기 업무 추진
	8	국제트레일 러닝 업무 추진	8	국제트레일 러닝 업무 추진
	9	축제 프로그램 신규 발굴	9	축제 프로그램 신규 발굴
	10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10	국내·외 관광객 유치 기획 총괄
	11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11	국내·외 관광설명회, 업무협약 추진
	마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마	슬로시티 및 관광마케팅에 관한 사항
	1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1	슬로시티 업무 총괄 관리 및 추진
	2	관광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2	관광 관련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3	관광 홍보(동영상) 업무 추진
	4	관광 통계 업무 추진	4	관광 통계 업무 추진
	5	관광객 안내(웹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5	관광객 안내(웹투어) 및 인센티브 업무 추진
	6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6	관광 여행업 업무 추진
	7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7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안내 자원봉사자 관리
	8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8	하동군 홍보대사 관리 업무 추진
	9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9	공동브랜드 관리 업무 추진
	10	관광상품 개발	10	관광상품 개발
	11	관광불편 민원 처리 업무 추진	11	관광불편 민원 처리 업무 추진
	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시설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1	이병주문학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3	화개장터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4	삼성궁, 천제당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및 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5	지리산역사관 운영 및 관리	
6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6	최참판댁 운영 및 관리	

현 행		개 정 안		
민원 과장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가	민원행정 및 주민등록에 관한 사항
	1	민원안내 및 상담	1	민원안내 및 상담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2	여권업무 및 민원행정시책 추진
	3	민원 서비스 혁신(G4C)운영	3	민원 서비스 혁신(G4C)운영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4	민원(신고, 인·허가 등)접수 통제
	5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5	하동군 민원조정위원회 관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6	고객만족도설문조사
	7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7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인감업무
	8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군정기록물 관리	8	행정정보 공개운영 및 군정기록물 관리
	9	행정정보공동이용	9	행정정보공동이용
	10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10	무인민원 발급기 관리 및 운영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나	지적관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1	지적 관리 기획 및 조정
	2	지적 측량 검사	2	지적 측량 검사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3	KLIS 구축사업 기획·조정 업무
	4	도곽집합 등 도면 정비	4	도곽집합 등 도면 정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5	정밀한 연속도면 제작 추진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6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권한부여 등 관리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7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사업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8	토지등록사항정정 관련 업무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9	토지이동조사 및 지적 공부정리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10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	지적재조사 기획·조정 및 처리에 관한 사항
	1	지적재조사 사업	1	지적재조사 사업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2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별법 운영
	3	지리정보신규사업 타당성 및 연계성 검토 총괄	3	지리정보신규사업 타당성 및 연계성 검토 총괄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4	국가지리정보체계(NGIS)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5	타 정보화사업과 GIS연계업무 및 통합 D/B 지원	5	타 정보화사업과 GIS연계업무 및 통합 D/B 지원
	6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6	지하시설물 전산화사업
	7	지적공부세측지계변환업무	7	지적공부세측지계변환업무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라	부동산관리 기획·조정 및 주택특성 조사에 관한 사항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1	개별필지 특성조사, 지가 산정 및 검증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2	표준지 공시지가에 관한 업무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	부동산 실거래 업무	4	부동산 실거래 업무
	5	새주소 도로명 부여 및 관리	5	새주소 도로명 부여 및 관리
	6	공간정보사업	6	공간정보사업
	7	토지거래허가 업무	7	토지거래허가 업무
	8	개별주택 가격조사 계획수립	8	지명에 관한 업무(지명위원회)
	9	표준주택 가격에 관한 업무	8	지명에 관한 업무(지명위원회)
	마	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마	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1	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에 관한 사항
	2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2	생활민원 접수 및 처리
	3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3	가로등(보안등) 설치(단, 도로개설시 제외)
	4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4	가로등(보안등) 개보수 및 유지관리
	5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5	가로등(보안등) 고장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6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6	가로등(보안등) 안전점검 및 부적합 사항 처리	
7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7	가로등(보안등) 수리용 차량 운영	

하 동 군 공 보

(34) 제 469 호

현 행		개 정 안	
재정 관리 과장	실과명	분장사무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가	지방세 부과에 관한 사항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나	경리관계에 관한 사항
	1		1
	2		2
	3		3
	4		4
	다 세입에 관한 사항	다	세입에 관한 사항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9		9
	10		10
	11		11
	라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라	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8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마	국·공유재산 및 재물관리에 관한 사항
	1		1
	2		2
	3		3
4		4	
5		5	
6		6	
7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현 행		개 정 안		
산림 녹지 과장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산림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1 산림조성 종합기획		1 산림조성 종합기획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2 조림사업 및 사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3 임업단체 육성 및 지도관리	
	4 산림분야 종묘업 등록업무		4 산림분야 종묘업 등록업무	
	5 산림분야 공모사업		5 산림분야 공모사업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6 농림사업 시행 및 사후관리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7 임산물 생산·가공 및 유통사업 지도감독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8 공유림 관리에 관한 업무	
	9 백두대간 지원업무		9 백두대간 지원업무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나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1 산불방지 종합대책		1 산불방지 종합대책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2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및 예찰	
	3 숲 가꾸기 사업		3 숲 가꾸기 사업	
	4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4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5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5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계획수립 및 시행	
	6 송림공원 관리		6 송림공원 관리	
			7 임목벌채 허가, 신고	
			8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9 등산로 조성 및 관리	
			10 숲길 조성 및 관리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다 산림토목에 관한 사항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1 산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2 산림입지 조사		2 산림입지 조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3 사방사업 계획수립 및 관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4 산림재해대책 및 복구	
	5 임도시설 및 관리		5 임도시설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6 토석채취허가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7 보안림 지정 및 관리	
	8 임목벌채 허가, 신고		8 임목벌채 허가, 신고	
	9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9 산림경영계획에 관한 사항	
	10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10 임산물 굴·채취 허가 및 신고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사항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1 자연휴양림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2 수목원, 생태숲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3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및 관리		
4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4 산촌생태마을 조성 및 관리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마 가로수, 공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공원조성 및 관리		1 공원조성 및 관리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2 가로수 조성 및 관리		
3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3 자연공원(국립공원) 관련업무 전반		
4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4 도로변 꽃길 꽃동산 조성 및 관리		
5 군립공원 관리		5 군립공원 관리		
6 학교숲 조성 업무		6 학교숲 조성 업무		
7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7 국가하천 수변공원(4대강 사업구간) 관리		
8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8 하동공원 플라워파크 조성		
9 섬진강재첩테마공원 조성		9 섬진강재첩테마공원 조성		

하 동 군 공 보

(36) 제 469 호

현 행		개 정 안		
건설 교통 과장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가	건설종합계획, 주민숙원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	도로교통량 조사	1	도로교통량 조사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2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관리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4	오지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5	도서종합 개발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6	국토교통부 소관 국유재산 용도 폐지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7	건설기계 등록 및 조종사 면허관리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8	지하수 개발이용 인허가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9	국도, 지방도사업, 소규모사업 보상관련업무 일체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나	농업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1	농업기반 조성 종합 기획·조정
	2	경지정리 사업	2	경지정리 사업
	3	농업용수 개발	3	농업용수 개발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4	농업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유지관리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5	수리시설 안전점검 및 개·보수 사업
	6	농지개발사업 시행 인가	6	농지개발사업 시행 인가
	7	정주권 개발사업	7	정주권 개발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9	밭기반 조성사업	9	밭기반 조성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10	지표수보강개발사업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11	공유(도유)재산 관리(농업생산기반시설 내)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다	토목공사 및 각종 도로관리에 관한 사항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1	군도 및 농어촌도로 관리 및 정비
	3	접도구역 관리	2	도로공사로 인한 수익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3	접도구역 관리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4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관리 단속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5	도로 공작물 설치 허가(도로점용허가, 도로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6	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7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
	9	도로 설해대책	8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9	도로 설해대책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10	관내 도로 교량관리
	라	마을만들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1	군도, 농어촌도로 보상관련업무 일체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 선도, 일반)	라	마을만들기 관련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1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통합, 선도, 일반)
	3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2	권역단위 및 마을단위 종합개발사업
	4	신규마을조성사업	3	창조적 마을만들기사업
	5	시군 창의사업	4	신규마을조성사업
	6	특색있는 마을만들기사업	5	시군 창의사업
	7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6	특색있는 마을만들기사업
	8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7	활기찬 농촌프로젝트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마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8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및 관리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마	교통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1	교통행정 종합기획·조정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2	자동차 운송사업 인·허가, 등록 및 지도감독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3	자동차관리사업 인·허가 지도감독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5	교통시설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6	노상 및 노외 주차장에 관한 사항	
		7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	

현 행		개 정 안		
환경 보호 과장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가	환경보전업무 종합계획수립, 기후변화, 생태에 관한 사항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1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2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3	환경영향 평가 및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관련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4	수변구역 관리 및 행위허가, 협의 업무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5	일반 및 직접지원 주민지원사업 추진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6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수립 시행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7	개발관련 오염총량 협의 및 부하량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8	토양오염 유발시설 인허가 및 관리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9	기후변화 대응 관련업무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0	탄소포인트제 시행 및 평가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11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구성운영 및 지원
	1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12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업무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13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관한 업무
	14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14	녹색시범마을 육성 지원
	나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15	지리산생태과학관 관리, 지리산국제환경생태예술계 운영
	1	환경오염 근절대책 추진	나	대기, 폐수, 소음·진동,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및 환경오염 단속에 관한 사항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	1	환경오염 근절대책 추진
	3	환경오염피해 발생 조정관련 업무	2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 및 관리
	4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3	환경오염피해 발생 조정관련 업무
	5	생활, 건설 소음진동 규제관련 업무	4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
	6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추진	5	생활, 건설 소음진동 규제관련 업무
	7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특정시설 설치신고	6	폐수종말 처리시설 기본계획 추진
	8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규제	7	비산먼지 발생사업(변경)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특정시설 설치신고
	9	대기환경 규제 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8	조수보호 및 유해조수 규제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대기환경 규제 지역 지정 및 관리업무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다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1	폐기물처리 및 자원재활용 종합계획 수립 추진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2	생활폐기물 불법처리행위 지도단속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3	일회용품 규제대상 업소 지도단속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및 사후관리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5	자연발생 유원지 지정 및 운영관리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중화장실 총괄 관리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라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1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전반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2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시설 운영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3	소각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4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5	매립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6	재활용 선별시설 운영 및 유지관리

하 동 군 공 보

(38) 제 469 호

현		행		개		정		안	
농축산 과장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가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가	농업정책 및 농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1	센터 소관업무의 종합기획 조정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2	농어촌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			
	3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3	경관보전 직불제 및 경관작물 축제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4	농촌특산단지 및 농업법인 육성지도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5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사항			
	6	지방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6	지방혁신계획 수립 및 추진			
	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7	농촌활력증진사업 추진 및 지역전략산업 육성			
	나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나	농업지원에 관한 사항			
	1	양곡 수급관리			1	양곡 수급관리			
	2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2	식량작물(쌀, 밭농업) 직불금 지원			
	3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3	농어촌 진흥기금 관리 운영			
	4	FTA 대책 및 지원사업			4	FTA 대책 및 지원사업			
	5	친환경농업 직불제			5	친환경농업 직불제			
	6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6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7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7	농업인용자이전보조금지원사업			
	8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다	축산행정 및 시설물, 기술지도에 관한 사항			1	한우산업 육성			
	1	한우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2	낙농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3	양계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4	양돈산업 육성			5	양봉, 토봉산업 육성			
	5	양봉, 토봉산업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6	기타 가축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7	축산물 브랜드 육성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라	가축방역 및 축산환경에 관한 사항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1	가축방역 및 약품지원 사업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2	가축 질병예찰 및 병성감정			3	공수의 지도 감독			
	3	공수의 지도 감독			4	공동방제단 운영			
	4	공동방제단 운영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5	반려 및 유기동물 관리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6	가축전염병 발생축 살처분 및 보상			7	축산환경개선				
7	축산환경개선								

현 행		개 정 안	
실과명	분장사무	실과명	분장사무
	가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 농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가 농업의 신소득작물 개발과 친환경 농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농업 소득 과장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1 친환경농업 육성 시책관리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2 친환경농업단지 및 생태농업단지 조성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3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4 친환경농산물 인증관리 및 친환경인증 활성화
	5 과학영농시설 운영	5 과학영농시설 운영	5 과학영농시설 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6 지역농업개발센터 종합운영
	7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실증시범 사업	7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실증시범 사업	7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실증시범 사업
	나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나 식량작물 육성에 관한 사항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1 식량생산 종합계획 수립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3 고품질 쌀 생산 및 기술지도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4 보급종 등 우량종자 보급 및 종자업 등록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5 농약 안전 사용 및 현장기술 지도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6 토양·식물체·관개수 등 환경농업 실태조사 및 분석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7 농업재해 조사 및 복구 지원사업
	다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다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다 원예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채소·화훼 종합계획 및 생산	1 채소·화훼 종합계획 및 생산	1 채소·화훼 종합계획 및 생산
	2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2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2 수출전략 작목 개발 및 농가보급
	3 채소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3 채소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3 채소 지역 특화품목 육성·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4 시설채소·노지채소 신기술 보급지도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5 채소 및 화훼분야 소득작목 개발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6 시설채소 육성 및 지원사업	
7 채소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7 채소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7 채소 농약 안전사용 및 병해충 방제	
라 과수, 특용작물 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라 과수, 특용작물 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라 과수, 특용작물 산업 육성 및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	
1 과수·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1 과수·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1 과수·특용작물 종합계획 수립 및 생산	
2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2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2 FTA대응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	
3 과수·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3 과수·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3 과수·특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4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4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4 버섯재배 및 시범사업 추진지도	
5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5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5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	
6 잠업 기술 지도	6 잠업 기술 지도	6 잠업 기술 지도	
7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7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7 농작물 재해보험 관리	
마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마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마 녹차산업 육성 및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1 하동 녹차산업 발전 종합계획 수립	
2 공동 포장제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성사업	2 공동 포장제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성사업	2 공동 포장제 지원사업 및 품질개선 등 경성사업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3 녹차산업의 부가가치 증대계획 수립 시행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4 녹차연구소 관련 업무·사업 지원 및 점검	
5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5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5 차 문화센터 관리운영	

하동군 고시 제2016-146호

도로명주소 부여고시(209차)

우리군 신축 건물 및 도로명주소 미부여 건물에 대한 도로명주소 신규 부여사항이 있어 「도로명주소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새로이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 11. 11.

하 동 군 수

○ 도로명주소 :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진목길 25-7 외 2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별 지 참 조(30건)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동군청 민원과(☎880-2124)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6. 11. 11.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는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하 동 군 공 보

(41) 제 469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 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범왕리 642-2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진목길 25-7	20161111	20070618	참나무 숲이 무성하여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83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4-48	20161111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 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160-1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길 273-35	20161111	20070618	부춘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89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4-39	20161111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 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86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4-33	20161111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 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388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4-35	20161111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 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호리 1412-2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명사길 384-45	20161111	20070618	명호입구부터 절골까지 도로가 명사길이라 불리워졌기 때문에 명사길로 명명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두곡리 770-3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93-15	20161111	20070618	화심이라는 자연마을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병천리 662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덕천로 102-175	20161111	20070618	도로구간이 덕천강을 따라 이어지고 있어 강이름에서 도로명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리 388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술상길 57-39	20161111	20070618	술상이라는 법정리명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원리 521-2, 521-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송외길 15-1	20161111	20070618	송외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99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발꾸미길 67-15	20161111	20070618	발꾸미라는 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운수리 358-9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로 564	20161111	20070618	도지정 기념물 제21호인 지리산 쌍계사 가는길로 탐방객의 인지도를 고려하고 역 사성을 반영하여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백련리 549-7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안심길 64-10	20161111	20070618	안심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이리 163-12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이곡길 115	20161111	20070618	이곡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덕은리 140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중터길 30-75	20161111	20070618	남쪽의 새터가 생기자 중터 라고 부른 옛지명에서 유래	

하 동 군 공 보

(42) 제 469 호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고시일	도로명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비고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회신리 786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내회신길 113-23	20161111	20080402	양지마을 옆 회신교에서 계곡을 따라 깊숙히 들어간 곳에 위치한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천리 252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횡계길 133-13	20161111	20080402	횡계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학리 183-13	경상남도 하동군 횡천면 중마길 167	20161111	20080402	중마라는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 750-1, 747-4, 747-5, 748-1, 75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신노량길 10	20161111	20090302	신노량이라는 자연마을이름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우계리 969-4, 969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적량로 174	20161111	20090302	적량면의 중앙을 통과하는 간선도로로 면이름에서 도로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770-1, 769-9, 770-3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금오산길 182-5	20161111	20090302	금오산의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고통리 269	경상남도 하동군 진교면 새미골길 25	20161111	20090302	새미골의 골짜기 지명을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1003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77-29	20161111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리 734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정금대비길 67-32	20161111	20090302	정금과서 대비로 이어지는 도로로서 행정리명의 명칭을 합성하여 도로명에 반영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탑리 155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백혜길 45	20161111	20090302	마을명 부여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법대리 산 70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옥수로 110-17	20161111	20090702	행정구역명(옥종+수곡면) 활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화심리 1647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576-35	20161111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덕천리 산 145-7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섬진강대로 683-1	20161111	20090710	섬진강 지역명 사용	
건물번호 부여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양구리 464-7	경상남도 하동군 옥종면 뒷뜰길 109-33	20161111	20120125	정수와 접한 마을인데 의양의 뒷뜰로 붙여진 자연마을이름 반영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강종완	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문화로33 206동 1801호 (명륜동, 동래센트럴파크하이츠 2차)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상남도 하동군 고전면 대덕리 714번지 8호 인근지번 : 고전면 대덕리 498(장)		
	면적	905㎡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경작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 동 군 공 보

(44) 제 469 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양인석	주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70-8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746(구), 인근지번 : 107-5(답)		
	면적	19㎡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일반 공작물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양인석	주소	하동군 청암면 청학로 2570-8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749-1(구), 인근지번 : 107-5(답)		
	면적	789㎡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일반 공작물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이명석	주소	하동군 고전면 전도2길16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고전면 전도리 1293-1(구) 인근지번 : 전도리 187(대)		
	면적	35㎡		
	기간	2016. 1. 1. ~ 2021. 12. 31.		
	목적	일반 공작물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이상부	주소	하동군 하동읍 남당길 27-2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고절리 1202-7(구) 인근지번 : 고절리 1202-49(전)		
	면적	228㎡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야적장을 위한 점용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임경두	주소	하동군 하동읍 매화골먹점길 246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흥룡리1741(구), 인근지번 : 흥룡리 34(전)		
	면적	99㎡		
	기간	2016. 12. 23. ~ 2021. 12. 22.		
	목적	일반 공작물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 2016-1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임정근	주소	하동군 황천면 경서대로 1037-8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황천면 남산리 1187(구), 인근지번 : 남산리 20(답)		
	면적	550㎡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기타 목적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48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최동열	주소	하동군 하동읍 금남면 중평해안길 121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근남면 중평리 851-2(구) 인근지번 : 중평리116(답)		
	면적	167㎡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경작 목적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 · 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49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장선자	주소	경남 김해시 함박로 162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화개면 탐리 868(구) 인근지번 : 탐리 584(대)		
	면적	102㎡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 2016-149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최병철	주소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천로 94번길19, 104-3107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1017-1(구) 인근지번 : 청룡리 354-1(답)		
	면적	257㎡		
	기간	2016. 4. 13. ~ 2021. 4. 12.		
	목적	경작 목적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동군 고시 제2016 - 150호

경상남도(창녕·하동·산청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동군) 기본계획 고시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따라 경상남도(창녕·하동·산청군)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하동군) 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하 동 군 수

1. 공사의 목표 및 기본방향

○ 목 표

-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녹물발생, 이물질 유입 예방 등 안전한 수돗물 공급, 누수 저감을 통한 안정적 수돗물 공급 및 가뭄 대응, 블록 및 유지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함

○ 기본방향

- 우수율 및 유지관리 용이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 계획 수립 후 사업 추진
- 관망상태에 대한 정확한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선별적 관망정비
-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한 감시·제어 시스템 구축

2. 공사 개요

- 위 치 : 하동군 급수구역 일원
- 공사기간 : 2017년 ~ 2021년
- 총사업비(예정) : 29,187백만원

하 동 군 공 보

(54) 제 469 호

○ 공사내용

급수체계정비 및 블록시스템 구축	관망정비	누수탐사 및 복구	유지관리시스템 구축
급·배수관 신설 4.8km 및 유량계 설치 등	급·배수관 교체 39.5km 등	누수탐사 및 복구 160.0km	1식

4. 시 행 자 : 하동군수

5. 공사수행계획 : 대형공사입찰방법심의에 따라 수행

6. 연차별 재원조달 및 시행계획

○ 재원조달 : 국고보조(50% + 0~20*) 및 지방비

* 수도사업 경영개선 계획 및 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매년 0~20% 국고보조율 차등

○ 연차별 투자 및 시행계획

- 사업시행기간의 예산범위에 따라 연차별 시행

7.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

○ ICT 인프라(상수관망 유지관리시스템) 및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 상수관망 전담 조직을 활용한 유지관리

8. 환경보전계획

○ 기본설계 시 별도 수립할 계획

9. 기대효과

○ 노후 상수관망 정비로 연간 1,033백만원의 수돗물 생산비용 절감 예상 및 지속가능한 유지관리체계 도입으로 수도사업 선순환 구조 구축

10. 기본계획의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사업종료 시까지

○ 공람장소 : 하동군 상하수도사업소 (☎055-880-2591)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 고시

고시 제2016-151호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사용 변경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11월 22일

하 동 군 수

점용·사용 허가를 받은 자	법인 및 상호 명칭			
	대표자 (성 명)	강영선	주소	하동군 적량면 동촌길 56
공사(점용· 사용) 개요	장소	경남 하동군 적량면 동리 1435(구), 인근지번 : 동리 954(답)		
	면적	15㎡		
	기간	2016. 9. 30. ~ 2021. 9. 29.		
	목적	진출입로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계획평면도 및 위치도

하동군 공고 제2016-1075호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2. 제안 이유 :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체결 등에 필요한 기준, 사후관리, 교류 사업 지원 등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일련의 체계화된 법적 근거 마련
3. 주요 내용 :
 - 정의 및 기본 목표 등(안 제2조부터 안 제5조까지)
 -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및 지원근거 명시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까지)
 -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부터 안 제19조까지)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2월 4일까지 하동군(참조 : 국제통상과, 전화 055-880-2243, FAX 880-2869, e-mail:nano70@korea.kr)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안
(별표, 별지서식 포함)
2.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건	비고

하동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의 확대와 내실화로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제도시로 성장·발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하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이를 지역발전의 원동력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
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 간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 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3. "자매도시"란 외국도시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 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 관계를 맺고 자매결연을 한 도시를 말한다.
4. "우호도시"란 외국도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 전 단계인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
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물적·제도적 토대의 구축
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
4. 군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군민 육성

제4조(적용범위)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 하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이 경우 경제, 사회, 교육, 문화예술, 체육, 환경, 보건복지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국제화 촉진 및 교류협력사업의 추진

제6조(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중장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국제화 전략의 중장기 목표 및 기본방향
2. 도시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국제도시 이미지 제고 및 세계화 전략
3.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교류 전략
4.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 활성화 방안 및 민간교류 네트워크 구축
5. 국제 통상 및 투자유치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기여 방안
6.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
7. 사업추진을 위한 자원 조달 방안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군수가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류협력사업의 범위)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
2. 문화·예술·체육·경제·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
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4.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행사 및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
5. 해외시장 개척 등 국제통상 활동
6. 관광 활성화 사업
7.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공동 기념사업
8.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교류협력사업의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군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군과 교류관계에 있는 외국 도시 또는 단체와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 30조 기준에 따른다.

제9조(재난·재해 구호 지원) 군수는 자매·우호도시가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군수는 세계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국제적으로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화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내·외국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의 선정·운영

제12조(협정체결 등) 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

② 자매결연을 할 수 있는 외국도시의 수는 재정여건과 국제교류협력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3조(사전검토) 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협정체결 제의를 받거나 군이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
5. 역사적·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교류의 지속 가능성 등

제14조(사전교류) 군수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협정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의회·학계·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5조(군의회 의결) ① 군수는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군수는 외국도시와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16조(협정체결의 효력) 협정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를 대표하는 사람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7조(교류사업의 내실화) 군수는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와의 교류가 군의 국제화 촉진 및 지역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협정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보존기간을 정하고 협정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해야 한다.

제19조(협정의 파기) ① 군수는 협정체결 후 양 도시 간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단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체결된 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매도시와의 협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매도시 등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정 관계에 있는 도시들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한 것으로 본다.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하동군 공고 제2016-1078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안 입법예고

하동군 판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하 동 군 수

1. 자치 법규명 : 하동군 판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2. 제안 이유 : 유성준·이선유 명창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 발전 및 선양과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격조높고 품격있는 판소리 체험관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변경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하동군판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명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으로 변경
- 나.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 제2조 1호, 제3조 ①항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변경
- 다.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변경(조례전반)

4. 의견 제출 : 이 자치 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개인은 2016년 12월 5일까지 하동군(참조 : 문화관광실 전화 880-2862, FAX 880-2369)에게 **【별지 서식】** 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붙임 1. 하동군 판소리체험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별표, 별지 서식 포함)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64) 제 469 호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의 견	비고

조례 제 호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체험관”이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을 “”기념관”이란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4호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기념관의 명칭은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라 한다.

제3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4조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3조제3호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체험관”을 “기념관”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중 “체험관”을 각각 “기념관”으로 한다.

별표 1,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6) 제 469 호

[별표 1]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체험시설 이용료 (제8조 관련)

이용구분	기준	이용시간		이용요금	비고
체험시설 (체험, 교육)	평일	전일	09:00~18:00	50,000원	
		오전	09:00~13:00	25,000원	
		오후	13:00~18:00	25,000원	
		야간	18:00~22:00	40,000원	
	토요일· 공휴일	전일	09:00~18:00	70,000원	
		오전	09:00~13:00	35,000원	
		오후	13:00~18:00	35,000원	
		야간	18:00~22:00	50,000원	

※ 이용시간의 일부만 이용하고 행사가 종료된 경우에는 전부 이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천재지변, 우천 등으로 이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별표 2]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숙박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단위 : 원)

구 분		기준	이용시간	일~목요일	금~토요일, 공휴일 앞날
숙 박	전통한옥 체험관	1박(1실 4명)	14:00 부터 ~ 다음날 10:00 까지	35,000	50,000

(68) 제 469 호

[별지 제1호서식]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단체명 또는 개인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비 고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참석예상인원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기념관 시설 이용을 (신규, 변경) 승인 합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별지 제4호서식]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시설이용 승인(취소·변경) 신청서

신 청 인	주 소			
	개인 또는 단체명		연 락 처	
	성 명 (대표자)		생년월일	(남/여)
이용일시	년 월 일(: ~ :)			
이용목적 (행사명)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이용일시			
	기 타			
비 고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판소리 기념관 시설 이용승인을(취소,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5호서식]

수탁신청서

- 1. 시설명 :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 2. 신청자 기재사항

단체명 또는 개인		단 체 구 분	
허가(등록)기관		허가(등록)일자	
허가(등록)번호		목 적 사 업	
대표자 성명		대표자 또는 개인 (생년월일)	(남/여)
대표자 또는 개인 주소			
단체 또는 개인 소재지			

3. 제출서류

- 가. 사업계획서
- 나.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이력서
- 다. 사업자등록증 1부.

4. 약정사항

- 가. 수탁 결정 통지서를 받은 후, 지정 기일 내에 운영하여야 함.
- 나. 조례 및 관계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함.

년 월 일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을 신청합니다.

위 단체 대표자 및 개인 : (인)

하동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수탁 결정 통지서

시설명 :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수탁자 성명 :

주소 :

귀 단체 또는 개인은 「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제17조에 따라 수탁자로 결정되었음을 통보하오니,

년 월 일까지 우리 군과 협약계약을 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년 월 일

하 동 군 수 (인)

[별지 제7호서식]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위탁 관리운영 협약서 안

(재산의 표시)

소재지 :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시설물 :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기타 부대시설 등

위 표시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운영을 위탁 협약함에 있어 위탁자 하동군수를 갑(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를 을(이하 “을”이라 한다)로 정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위탁기간) 갑은 위 표시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을 을에게 위탁하고, 위탁기간은 년 월 일 ~ 년 월 일까지로 한다.

제2조(준수사항) ① 을은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운영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갑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변경 또는 훼손하지 못한다.
 2. 수탁권을 군수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양도·전매 또는 임대할 수 없다.
 3. 수탁권을 채권의 담보로 할 수 없다.
 4.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도박 등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 ② 제1항 각 호를 위반한 결과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을은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거나 을의 부담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3조(민·형사의 책임 등) ① 을은 시설물 관리 운영에 있어 주의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 ② 제1항의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을은 피해 당사자 또는 갑에게 전액 보상을 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거나 갑에게 보상을 요청할 수 없다.
- ③ 을은 시설을 수탁 관리하면서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갑이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조건) ① 본 위탁 재산 일부를 갑이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을과 협의하여야 하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갑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무상으로 한다.

- ② 을은 시설물 등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 운영하되, 특히 주변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역주민 또는 탐방객들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지조건) ①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갑은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② 제1항에 의하여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읍은 갑이 지정하는 기일 내에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등 모든 시설을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해지통보) 갑과 읍이 어느 일방의 사정으로 본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2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원상회복) 읍이 사용한 시설물을 갑에게 반납할 때, 갑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탁받은 당시의 상태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운영 예정일) ① 관리운영 예정일은 년 월 일로 정한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기간 내에 읍이 운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수탁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하동군 관련 조례 등의 제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이 없거나 본 계약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되 의견의 일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0조(협약서의 효력 등) ① 본 계약서의 효력은 계약일로부터 발생하고 민·형사상의 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건 종료 시 까지 효력이 있다.
②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읍이 서명 날인 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위탁자) :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 동 군 수 (인)

읍 (수탁자) : 단체 대표자 또는 개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하동군 판소리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동 출신의 동편제 명창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판소리의 보존·계승발전 및 선양을 위하여 건립한 <u>하동군 판소리 체험관</u>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체험관</u>"이란 하동군 판소리 <u>체험관</u>의 전시실 및 감상실, 교육관, 한옥체험관, 누각, 관리사무소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 2. (생략) 3.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u>체험관</u>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4. "이용료"란 <u>체험관</u>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u>체험관</u>의</p>	<p><u>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u></p> <p>제1조(목적) ----- ----- ----- ----- <u>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u>----- -----.</p> <p>제2조(정의) ----- -----.</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기념관</u>"이란 <u>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u>----- ----- -----. 2. (현행과 같음) 3. ----- <u>기념관</u>----- -----. 4. ----- <u>기념관</u> ----- ----- -----. <p>제3조(명칭 및 위치) ① <u>기념관</u>의</p>

명칭은 하동군 판소리 체험관이라 한다.

② 체험관의 위치는 하동군 악양면 하중대길 44-54 일원에 둔다.

제4조(업무) 체험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략)
6. 체험관의 운영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무
7. 그 밖에 군수가 체험관의 건립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체험관은 군수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체험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판소리의 보존·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체험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자체 규정을 정할 수 있다

명칭은 유성준·이선유 판소리 기념관이라 한다.

② 기념관-----

--.

제4조(업무) 기념관-----
-----.

1. ~ 5. (현행과 같음)
6. 기념관-----

7. ----- 기념관-----

제5조(관리운영 및 위탁) ① 기념관은 -----.
--- 기념관의 -----

-----.

② ----- 기념관-----

----- 기념관 -----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
고는 매일 개관한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제7조(이용시간) ① 체험관의 이
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
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
용시간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1. · 2. (생 략)

② (생 략)

제8조(이용료) ① 체험관의 시설
중 전시실 · 감상실의 이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체험시설과
숙박시설의 이용료는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

② · ③ (생 략)

제11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에 대하여는 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생 략)

2. 체험관 내에서 공공의 질서
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3. (생 략)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기념관--

-----,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이용시간) ① 기념관-----

-----,

-----,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이용료) ① 기념관-----

-----,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의 제한) -----

----- 기념관-----

-----,

1. (현행과 같음)

2. 기념관 -----

3. (현행과 같음)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시
 설이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단, 전시실 및 감상실
 만을 이용하고자 할 때는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
 다.

② · ③ (생략)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
 지)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이용승인을 취소 또는 정
 지할 수 있다.

1. 2. (생략)

3. 체험관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변상책임) ① (생략)

② 체험관 내 시설물 변상에 대
 한 세부사항은 「하동군 물품 관
 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생략)

② 체험관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

제12조(시설이용 승인) ① 기념관

 -----,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이용승인의 취소 또는 정
 지) -----

 -----,

1. 2. (현행과 같음)

3. 기념관 -----

제14조(변상책임) ① (현행과 같
 음)

② 기념관 -----

 -----,

제15조(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념관-----

탁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군수에
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존의 수
탁자가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생 략)

제18조(위탁사용료) ① 체험관의
위탁에 따른 사용료는 「공유재
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및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 따라 정한다.

② 협약에 따라 사용 수입액과
체험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원가산정 사용비용을 상계하여
위탁 사용료로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① 군수
는 유성준·이선유 선생의 선양
사업과 그 밖의 판소리 관련 사
업 추진, 그 외 체험관 운영 등
을 위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
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
다.

② (생 략)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생 략)

③ 수탁자가 체험관 내 시설물
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위탁사용료) ① 기념관--

② -----
- 기념관-----

제20조(보조금 등 지원) ① -----

----- 기념관 -----

② (현행과 같음)

제22조(수탁자의 의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기념관 -----

을 때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익금을 체험관 운영 관리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생략)

⑥ 체험관의 운영·관리 시 소요되는 경비는 수탁자의 부담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⑦ 수탁자는 체험관의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 증축 등 특별한 설비가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수탁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⑧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과 관련하여 군에서 지정한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

----- 기념관 -----

⑤ (현행과 같음)

⑥ 기념관-----

⑦ ----- 기념관-----

-.

⑧ ----- 기념관 -----

-----.

하 동 군 공 보

(82) 제 469 호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16-1076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 지에스이		
	대표자 (성명)	유석형	주소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412-30
소하천명		영신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73-1(천), 인근번지 : 동산리 1789-1(임)		
	면적	일시점용	10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영구점용	15.30㎡	
	기간	일시점용	2016.11.~2017. 1.(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영구점용		2016.11~2100.11		
목적 및 사유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 공고

공고 제2016-1083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주) 지에스이			
	대표자 (성명)	유석형	주소	경남 사천시 사천읍 구암두문로 412-30	
소하천명		영신천			
공사(점용·사용) 개요	위치	하동군 적량면 동산리 1773-1(천), 인근번지 : 동산리 1789-1(임)			
	면적	일시점용	102㎡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영구점용	15.30㎡		
	기간	일시점용	2016.11.~2017. 1.(착공일로부터 2개월간)		
영구점용		변경 전 2016.11~2100.11.	변경 후 2016.11~영구		
목적 및 사유		도시가스 배관 매설			

열람서류(하동군 재난관리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6-109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김충평	주소	경남 하동군 옥종면 구시장길 26
소하천명		안시골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옥종면 안계리 817-38		
	면적	15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6.4.13.~2021.4.12		
	목적 및 사유	기타 목적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6-109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박복엽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169-22
소하천명		목골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하동읍 비파리 56-3(천)		
	면적	73㎡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6.4.13.~2021.4.12.		
	목적 및 사유	기타 목적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6-109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안방우	주소	경남 하동군 하동읍 화심길 234
소하천명		세동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암면 목계리 1749(천)		
	면적	1776㎡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6.4.13.~2021.4.12		
	목적 및 사유	기타 목적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연장 허가 공고

공고 제2016-1091호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공사 시행(소하천의 점용·사용) 연장 허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하 동 군 수

시행자 (점용·사용 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홍은표	주소	경남 하동군 청암면 삼신봉로 100-1
소하천명		삼성천		
공사(점용· 사용) 개요	위치	경남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1749(천)		
	면적	11㎡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0㎡
	기간	2016.12.19.~2021.12.18.		
	목적 및 사유	일반 공작물		

열람서류(하동군 안전총괄과에서 열람 가능)

1. 실시설계도서(시설 또는 인공구조물의 설치나 이에 준하는 사항인 경우만 해당)
2. 위치도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6 - 1096호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경남개발공사에 보상업무 위·수탁으로 진행하는 「하동소하천 정비사업(대송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 11. 18.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하천 정비사업
 - 명칭 : 하동소하천 정비사업(대송천)
2. 사업자 : 하동군수
3. 위치 : 경남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33-2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하동소하천 정비사업(대송천)
5.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1.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하동군 안전총괄과
【☎ 055-880-2533】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실제					
1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272-12	도로	도로	21	21	정기용	(등)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26 (송달)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326			
2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679	하천	하천	53	53	최대성	(등) 없음 (초본, 송달) 없음			
3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13-1	답	답	948	948	강영태	(등)부산시 사하구 신평동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101 (초본, 송달)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248			
4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13-2	답	답	954	954	강영태	(등)부산시 사하구 신평동408 신익강변타운 1차 101-101 (초본, 송달)하동군 금남면 덕오길 248			
5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34-11	답	답	201	201	임정례	(등)부산시 강서구 강동송백6길 197(강동동) (초본)부산시 강서구 강동송백6길 197(강동동) (송달)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46(양정동, 아이에프빌딩15층 VIP지점)			
6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40-16	답	답	145* 1/2	145* 1/2	장미화	(등)전남 여수시 신기동90 제일모직사택5동 202호 (초본, 송달)전남 여수시 여서2로20,5동702호(여서동, 금호아파트)			
7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740-16	답	답	145* 1/2	145* 1/2	전정란	(등)전남 여수시 소호로 208-42, 402호(소호동, 금호렉스빌) (초본, 송달)전남 여수시 소호로 208-42, 402호 (소호동, 금호렉스빌)	진해성심 신용협동 조합	창원시 진해구 중앙중로 66(대흥동)	근저 당권
									(주)유성 종합 목재	전남 순천시 조례동 499-1	가압류

하 동 군 공 보

(90) 제 469 호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실제					
									조양 산업 (주)	전남 여수시 여수 산단로 292-16 (월하동)	가압류
									황현식	전남 여수시 박람회 길61, 104동 802호 (덕충동 엑스포 힐스테 이트1 단지)	가압류
									박도훈	전남 여수시 울촌면 대초길 18-1	가압류
									김세곤	전남 여수시 소호동 559	가압류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 업 명	
수용대상토지, 물건내역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6 - 1097호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경남개발공사에 보상업무 위·수탁으로 진행하는 「하동소하천(사두골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 11. 18.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하천 정비사업
- 명칭 : 하동소하천(사두골천) 정비사업

2. 사업자 : 하동군수

3. 위치 : 경남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62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하동소하천(사두골천) 정비사업

5.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2.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하동군 안전총괄과

【☎ 055-880-2533】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하 동 군 공 보

(94) 제 469 호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실제					
1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55-8	도로	도로	10	10	곽우분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30 (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30			
2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62	답	답	46	46	김낙희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26 (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26			
3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64-4	도로	도로	19	19	이영규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34 (초본,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길 82			
4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61-12	답	답	173*1 /3	173*1 /3	이철규	(등)서울시 은평구 갈현동 340-4 (초본,송달)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180나길 33-29, 115동 904호(도봉한신아 파트)			
5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61-12	답	답	173*1 /3	173*1 /3	이금규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34 (초본,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길 82			
6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19-1	답	답	1* 1/2	1* 1/2	김궁성기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26 (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26			
7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19-2	답	답	158* 1/2	158* 1/2	김궁성기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26 (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26			
8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28	답	답	83* 1/2	83* 1/2	김궁성기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26 (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26			
9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19-1	답	답	1* 1/2	1* 1/2	김궁현두	(등)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37 (송달)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37			
10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19-2	답	답	158* 1/2	158* 1/2	김궁현두	(등)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37 (송달)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37			

하 동 군 공 보

(95) 제 469 호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실제					
11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28	답	답	83* 1/2	83* 1/2	김궁현두	(등)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37 (송달)하동군 양보면 우복리 337			
12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1131-4	답	답	11* 1/4	11* 1/4	김상철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91 (초본, 송달)울산시 북구 동대20길20, 202호(호계동)	국민 건강 보험 공단 고양 지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28 KT5층	압류
13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36-9	임야	임야	545* 1/6	545* 1/6	강봉규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30 (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30			
14	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436-9	임야	임야	545* 1/6	545* 1/6	황귀용	(등)하동군 북천면 사평리 335 (초본)- (송달)하동군 북천면 사평길 80-3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 업 명	
수용대상토지, 물건내역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6 - 1098호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경남개발공사에 보상업무 위·수탁으로 진행하는 「하동소하천(상장암천)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 11. 18.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하천 정비사업
- 명칭 : 하동소하천(상장암천) 정비사업

2. 사업자 : 하동군수

3. 위치 : 경남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1107-1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하동소하천(상장암천) 정비사업

5.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2.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하동군 안전총괄과
【☎ 055-880-2533】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 토지조서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실제					
1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36-3	도로	도로	18	18	정호기	(등)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754 (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85-21			
2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67-14	답	답	155	155	정승용	(등)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469-1 (초본,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농어촌 진흥사 하동 남해 지사	하동군 읍 송림 1길 12	근저 당권
									금오 농업 협동 조합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9	근저 당권
3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67-15	답	답	383	383	정승용	(등)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469-1 (초본,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농어촌 진흥사 하동 남해 지사	하동군 읍 송림 1길 12	근저 당권
									금오 농업 협동 조합	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739	근저 당권
4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67-16	답	답	175	175	정양용	(등)부산시 연제구 여고로14번길26,20 1호(거제동,창신연립) (초본,송달)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 193,302호(은천동, 해amna래빌)			
5	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567-17	답	답	189	189	정양용	(등)부산시 연제구 여고로14번길26,20 1호(거제동,창신연립) (초본,송달)부산시 동래구 사직북로48번길 193,302호(은천동, 해amna래빌)			
6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40-40	도로	도로	8	8	배상윤	(등)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876-2 (초본,송달)하동군 양보면 중하쌍길 43-11			
7	하동군 양보면 감당리	250-14	답	답	325	325	장정갑	(등)하동군 양보면 장암리 674 (초본,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121			

하 동 군 공 보

(100) 제 469 호

□ 물건조서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양보면)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장암리	567-1 4	비닐하우스	철재,2중(6*15)	90㎡	정승용	(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2	장암리	567-1 4	급배수시설	스프링클러,온 도조절급수, 배수시설	1식	정승용	(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3	장암리	567-1 4	관정	정수필터포함	1식	정승용	(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4	장암리	567-1 5	비닐하우스	철재,2중 (6*15)*4동	360 ㎡	정승용	(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5	장암리	567-1 5	급배수시설	스프링클러,온 도조절급수, 배수시설	1식	정승용	(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6	장암리	567-1 5	관정	정수필터포함	1식	정승용	(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7	장암리	567-1 5	면벽	coc.c	20㎡	정승용	(송달)하동군 양보면 진양로 1007-20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 업 명	
수용대상토지, 물건내역		
의 견		
<p style="text-align: center;">『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6. . . .</p> <p style="text-align: center;">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전화번호 :</p> <p style="text-align: center;">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p>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

재결신청사항 열람공고

하동군 공고 제2016 - 1099호

하동군에서 시행하고 경남개발공사에 보상업무 위·수탁으로 진행하는 「하동소하천 정비사업(의신천)」에 편입되는 토지 등을 수용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16. 12. 18.

하 동 군 수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소하천 정비사업
- 명칭 : 하동소하천 정비사업(의신천)

2. 사업자 : 하동군수

3. 위치 : 경남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254번지 일원

4. 사업내용 : 하동소하천 정비사업(의신천)

5. 공고기간 : 2016. 11. 18. ~ 2016. 12. 2.

6. 관계서류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소유자 및 관계인은 공고기간 중에 하동군 안전총괄과
【☎ 055-880-2533】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 수용대상 토지 및 물건 : 붙임

하 동 군 공 보

(104) 제 469 호

토지조서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의 종류
			공부	실제	공부	실제					
1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041-9	답	답	73	73	이영옥	(등)김해시 어방동 대우유토포아아파트 111동1804호 (초본,송달)김해시 가야로 463번길14, 205동502호(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2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5	목장	목장	307	307	정용수	(등)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1 (초본,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3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7	답	답	46	46	정용수	(등)함양군 함양읍 용평리 681 (초본,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4	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26	답	답	268	268	정판봉	(등)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89 (초본,송달)부산시 해운대구 반여동 1088 반여현대아파트			

물건조서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화개면)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1	대성리	1041-9	녹차	3*10	30㎡	이영옥	(송달)김해시 가야로 463번길14, 205동502호(동상동, 롯데캐슬아파트)			
2	대성리	1327	엽나무	R5	5주	정용수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3	대성리	1327	산초나무	R5	1주	정용수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4	대성리	1327	고로쇠나 무	R5	1주	정용수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5	대성리	1327	매실나무	R10	1주	정용수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하 동 군 공 보

(105) 제 469 호

일련 번호	수용토지의 표시					소유자		관계인		
	소재지 (하동군 화개면)	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격	수량 면적	성명	주소 (현주소)	성명	주소	권리 의 종류
6	대성리	1327	돌배나무	R5	1주	정용수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7	대성리	1326	고로쇠나 무	R5~10	45주	정판봉	(송달)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89			
8	대성리	1326	오가피	-	4주	정판봉	(송달)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89			
9	대성리	1326	고로쇠나 무	R50	1주	정판봉	(송달)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89			
10	대성리	1326	헛개나무	R7	4주	정판봉	(송달)하동군 화개면 대성리 1389			
11	대성리	1325	창고	스레트/블록 (11.5*7.5)	86.3 m ²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12	대성리	1325	계사	목재/철판 (3*3)	9m ²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13	대성리	1325	감나무	R10	5주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14	대성리	1325	돌배나무	R10	6주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15	대성리	1325	돌배나무	R3	1주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16	대성리	1325	자두나무	R5	1주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17	대성리	1325	땅두릅	5년	5주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18	대성리	1325	매실나무	R15	15주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19	대성리	1325	대추나무	R15	2주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20	대성리	1325	주목나무	R15	4주	정홍균	(송달)하동군 화개면 의신안길 9-3			

의 견 서

제 목		
소유자	성 명	
	주 소	
사 업 시행자	사업자명	
	사 업 명	
수용대상토지, 물건내역		

의 견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6. . . .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귀중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

관련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또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이하 "토지수용위원회"라 한다)는 제28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관계 서류의 사본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토지수용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공고를 하였을 때에는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중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8.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①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그 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을 토지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송부하여 공고 및 열람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행정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자치구가 아닌 구를 포함한다)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그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공고의 내용과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뜻을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받을 자를 알 수 없거나 그 주소·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나면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서를 지체 없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서가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지난 후 제출된 의견서를 수리할 수 있다.